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계획

2024.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목 차

I. 목적	1
II. 근거	1
III. 개요	1
IV. 전형 방법	4
V. 대상별 세부 내용	7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7
제2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9
제2호 나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나목	12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다목	14
제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16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호	18
붙임(유형별 구비서류 목록)	20
서식 1. 특례입학 심사서류 표지	22
서식 2. 2025학년도 특례입학 신청서(평준화 일반고)	23
서식 3. 2025학년도 특례입학 신청서(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24
서식 4. 학부모 확인서	27
서식 5.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특례입학 심사 대상자 명단	28
참고 1. 외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29
참고 2. 학력 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31
참고 3.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32
참고 4. 외국의 초·중·고교 졸업 학력 인정 관련 안내	33
참고 5. 재외한국학교 현황	35
참고 6. 상담 시 주요 확인 사항	40
참고 7. 관계 법령	41
참고 8. 특례입학 관련 주요 질의응답	43

I. 목적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II.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자료 CRM 2023-102)
-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전북교육 2024-147)
-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전북교육 2024-214)

III. 개요

1. 특례입학 대상자 유형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 2 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학력인정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함.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신입학으로 간주함.

2. 특례입학 허용 기간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 소재 중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특례 신입학 예정자	외국 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6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 (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3학년 1학기 초)부터 1년 6개월 이내 (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3학년 1학기 초)부터 3년 6개월 이내 (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3. 특례입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 1회 특례 인정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4. 외국의 학교 과정 및 학교 인정 범위

가.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 기준

- 1)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나. 외국학교 인정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는 동일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5.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기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 분	거주기간	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외국학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IV. 전형 방법

1. 특례입학 전형 방법

가. 지원 방법

1) 학교장 전형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개별 지원한다.

※ 해당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2)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가) 제1호, 제4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제2호, 제3호: 출신 중학교에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선발 방법

1) 학교장 전형고: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전산 추첨).

2. 진행 절차

전형	구분		절차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서류제출(인편제출)		학생 → 지원 고등학교
	심사		지원 고등학교 ※지원학교의 전형 일정 참고
	결과 통보		지원 고등학교 → 학생
교육감 전형 고등학교 (평준화 일반고)	서류제출 (인편제출)	제1호, 제4호	학생 → 교육지원청
		제2호, 제3호	학생 → 중학교
	심사	1차 검토·제출	중학교 → 교육지원청
		2차 검토·제출	교육지원청 → 본청
		심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상세 일정 추후 안내
	결과 통보	제1호, 제4호	본청 → 교육지원청 → 대상자
		제2호, 제3호	본청 → 교육지원청 → 중학교 → 대상자

※ 전기 고등학교의 특례 신입학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은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특례전형 또는 일반전형 중 선택하여 신입학 지원할 수 있음

3. 서류 제출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보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학교장 전형고: 유형별 서류 및 신청서를 모두 구비하여 지원학교에 직접 제출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1) 지원자(특례입학 심사 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

※ 제출처

- 제1호, 제4호: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 제2호, 제3호: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2) 출신 중학교- 1차 검토·제출

○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 확인, 서류 보완

○ 관할 교육지원청 서류제출

- 전자문서: 신청서(서식2) 스캔본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 원본 및 관련 서류

3) 교육지원청- 2차 검토·제출

○ 자격심사

○ 제1호, 제4호 학생 신청 접수

○ 도교육청 서류제출

- 전자문서: 신청서(서식2) 스캔본 및 대상자 명단(서식5, 엑셀 서식)
-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 원본 및 관련 서류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종 심사

○ 도교육청에서 서류 검토 및 보완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특례입학 대상자 결정

○ 특례입학 대상자 통보

- ※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입학 자격이 취소됨
-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서류 제출 시기는 학교장 전형고의 경우 2025학년도 학교별 전형 요강을 참고하며, 교육감 전형고는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요강' 참고(2024. 9. 공고 예정)

【특례입학 관련 용어의 정의】

○ 특례입학

- 외국에서 장기간 수학한 학생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전형

○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것

○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완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 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a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편·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영사 확인

-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 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 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 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32쪽 참고)에 한함

V. 대상별 세부 내용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대상자

- 가.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대상자 세부 내용】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대상
- 총 교육 연한 9년과 상관없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이면 특례입학 대상

2. 제출 서류(붙임 참고)

□ 외국에서 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 나. 학부모 확인서(서식4) ※ 교육부 학력인정학교 목록의 시트명과 학교명을 반드시 명시
- 다.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두 가지 모두 제출)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성적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부 누리집에 공시된 학력 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함
- ※ **교육부 누리집(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학적 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참고**
 - 교육부 누리집 미공시 학교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라. 부, 모,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마.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

-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 나. 학부모 확인서(서식4)
- 다. 북한 이탈 주민확인서
- 라. 학력 확인서
- 마. 학력 인정증명서
- 바. 북한 이탈 주민 교육 보호 대상자 증명서

3. 제출처

- 가. 학교장 전형고 지원자: 지원 고등학교
-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관할 교육지원청

4. 자가 점검표

구 분	질 문	대 답		비 고	
		예	아니요		
대 상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학교 교육을 이수하셨습니까?		지원 불가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셨습니까?		3번 질문으로 이동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학교 교육을 9년 이상 이수하셨습니까?		지원 불가	

제2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④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대상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나.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부모는 1년 이상 체류하여야 함

【대상자 세부 내용】

○ 외국의 학교

-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 인정학교
-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의 학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특례입학 대상 아님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7~9학년)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 ※ 외국에서 4~6학년을 이수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만 재취학할 경우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학년 이상)을 미이수하였으므로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 연한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2년 이상 재학 및 2년 이상 거주

-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 필요
 - ※ 외국에서 5, 7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이 3년 미만으로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에는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축 적용할 수 있음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학생과 동일 국가 거주)
- 한부모가족의 학생은 부모 중 1명일 경우에도 해당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내에 학생과 동일한 국가에서 실제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체류하여야 함
 - ※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부모 중 한쪽만 해외 거주
- 불연속 3년 미만 재학(초등학교 1~3학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외국의 중학교 과정(7학년) 미이수
- 부모 중 한 명의 체류기간 부족

2. 제출 서류(붙임 참고)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나. 학부모확인서(서식4) ※ 교육부 학력인정학교 목록의 시트명과 학교명을 반드시 명시

다.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두 가지 모두 제출)

- 재학 학년, 재학기간, 성적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부 누리집에 공시된 학력 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함

※ 교육부 누리집(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학적 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참고

- 교육부 누리집 미공시 학교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라.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정원 외 등) 또는 졸업증명서
 - 최종재학 학년 및 최종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마.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바. 부·모·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사. 부·모·학생의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대체 가능 서류(예시)

-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 해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 ▷ 해당국 현지 기관 발행 체류 확인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
- ▷ 해당국 외국인 등록증, 의료 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 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추가 제출 서류(해당 사항만 제출)

- 가.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제3국 수학 인정서
- 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라. 재외동포 자녀의 경우: 국내 거소 사실 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4. 제출처

- 가. 학교장 전형고 지원자: 지원 고등학교
-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제2호 나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나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1. 대상자

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대상자 세부 내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특례입학 대상이 아님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니므로 대상자 아님

2. 제출 서류(붙임 참고)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나. 학부모확인서(서식4) ※ 교육부 학력인정학교 목록의 시트명과 학교명을 반드시 명시

다.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두 가지 모두 제출)

- 재학 학년, 재학기간, 성적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부 누리집에 공시된 학력 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함

※ 교육부 누리집(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학적 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참고

- 교육부 누리집 미공시 학교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라.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정원 외 등) 또는 졸업증명서
- 최종재학 학년 및 최종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마. 부·모·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 바.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사. 대한민국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3. 제출처

- 가. 학교장 전형고 지원자: 지원 고등학교
-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1. 대상자

- 가.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나.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대상자 세부 내용】

○ 외국인 학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국가 지역) 확인
- ※ 이중(복수) 국적을 가진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 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지원자 성명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 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 외국의 학교

-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 인정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특례입학 대상 아님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번역 공증 제출)

2. 제출 서류(붙임 참고)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나. 학부모확인서(서식4) ※ 교육부 학력인정학교 목록의 시트명과 학교명을 반드시 명시

다.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두 가지 모두 제출)

- 재학 학년, 재학기간, 성적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부 누리집에 공시된 학력 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함

※ **교육부 누리집(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학적 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참고**

- 교육부 누리집 미공시 학교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라.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마. 가족 관계 증명서(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모와 학생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학생만 제출

3. 추가 제출 서류(붙임 참고, 해당자만 제출)

가.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4. 제출처

가. 학교장 전형고 지원자: 지원 고등학교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제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말한다.

1. 대상자

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대상자 세부 내용】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2년 이상 재학
 - 북한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

2. 제출 서류(붙임 참고)

-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 나. 학부모확인서(서식4)
- 다.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라. 북한 이탈 주민확인서
- 마. 학력 확인서
- 바. 북한 이탈 주민 교육 보호 대상자 증명서

3. 제출처

가. 학교장 전형고 지원자: 지원 고등학교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재학 중인(졸업한) 중학교

4. 자가 점검표

구 분	질 문	답 변		비 고
		예	아니요	
대 상	1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이십니까?		지원 불가	
	2 <u>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u> 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3 북한에서 <u>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u> 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 방법)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제4호.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 이탈 주민 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대상자

가.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 이탈 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2. 제출 서류(붙임 참고)

가. 특례입학 신청서(서식2 또는 서식3)

- 나. 학부모확인서(서식4)
- 다.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라.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
- 마. 학력 확인서(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
- 바. 학력 인정 증명서
- 사. 북한 이탈 주민 교육 보호 대상자 증명서(북한 이탈 주민인 경우)

3. 제출처

- 가. 학교장 전형고 지원자: 지원 고등학교
- 나. 교육감 전형고(평준화 일반고) 지원자: 관할 교육지원청

4. 자가 점검표

구 분	질 문	답 변		비 고
		예	아니요	
대 상	1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으로 인정받았습니까?		2번 항목으로 이동
	2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 이탈 주민 등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있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지원 불가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정부 초청(추천) 과학기술 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학력 인정자 (제4호)	비 고
특례입학신청서	○	○	○	○	○	○	○평준화 일반고(서식2) ○학교장 전형고(서식3)
학부모 확인서	○	○	○	○	○	○	○학부모 자필 확인서(서식4)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 재학(졸업)증명서	○	○	○	○			○성과 재학(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외국 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탐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제출 ○교육부 누리집 미탐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 학력 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탐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 및 확인서 제출 ○교육부 누리집 미탐재학교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외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인쇄 등) 종전처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가까운 초·중·고에서 발급 신청 ○최종재학 년·월·일 및 최종재학 학년 명시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24 누리집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국가 행정구청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 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전(全)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	○	(○)	○	○	○행정구청,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누리집 ○전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 일자 이후 발행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1인이 한국 인일 경우 제출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정부 초청(추천) 과학기술 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학력 인정자 (제4호)	비 고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주무 부처
제3국 수학 인정서		(○) (부, 모)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국내 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24 누리집 ○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 동포 자녀에 한하여 제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부,모, 학생)					○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 학생)			○ 행정구청,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 민원24 누리집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 확인서	(○)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 인정 증명서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북한 이탈 주민 교육 보호 대상자 증명서	(○)				○	(○)	○ 해당 행정구청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제3국 수학 인정서: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의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발행
2.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고, 영문도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번역 공증받은 후 제출
3. **교육부 누리집의 외국 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학부모확인서에 시트명과 학교명을 명시**하고, 누리집 미탑재의 학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임을 소명하거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
4. 중학교에 재취학하여 고등학교에 특례입학하려는 경우, 중학교에서 재취학 당시 받았던 제출서류(학교 보관분) 일체를 복사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재취학 시 받지 못했던 서류가 있다면 추가하여 제출
5.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목록 순서대로 철하되, [서식] ‘귀국 학생 등 편·입학 심사서류 표지’ 를 첫 장에 놓음. 구비서류 중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귀국 학생 등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자의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서식 1

고입전형 특례입학 심사서류 표지

특례입학 심사서류 표지

확인 날인	담당자	교감

국내출신학교명	학교	성명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자택)	(보호자 휴대폰)	(학교)	

해당자별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 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학력인정자 (제4호)	비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례입학 신청서	○	○	○	○	○	○	서식2 또는 서식3
학부모 확인서	○	○	○	○	○	○	서식4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재학(졸업)증명서	○	○	○	○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전(全)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	○	(○)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 인정서		(○) (부, 모)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학생)	(○) (부,모,학생)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부,모,학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부,모,학생)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				○	(○)	
학력 확인서	(○)				○	(○)	
학력 인정 증명서	(○)					○	
북한 이탈 주민 교육 보호 대상자 증명서	(○)				○	(○)	

특례입학 신청서 작성 요령

1. 학교에 보관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학부모가 기록하고 담임 선생님이 확인한다.
2. 성명은 여권과 동일한 한글, 영문명을 모두 작성한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3. 지원자 학력
 - 가. 국내 학력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고,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적(정원 외 관리, 재학 사실 등)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나. 외국 학력의 경우 외국학교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한다.
 - ※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기입
4. 보호자 성명은 부, 모 모두를 작성하되, 한부모가족 또는 다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를 적고,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자택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5. 국외 거주 및 체류기간
 - 가. 거주기간은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해당 국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 나. 체류기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 내에서 해당 국가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다만,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다. 체류기간은 부모는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기간과 제3국 수학 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한다.
6. 첨부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대조 후 ‘원본 대조필’ 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서식2] 특례입학 신청서 작성 예시(평준화 일반고)

성 명	한글			영문			사진 (3cm × 4cm) 출신중학교 직인	
	정전북			<i>Jeong Jeon Buk</i>				
생년월일	<i>2009. 00. 00.</i>			성 별	.여			
국내 연락처	<i>(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i>			(휴대폰 번호) <i>010-1111-1111</i>				
지망 정보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	7지망	
	<i>전주신흥고</i>	<i>전주한일고</i>	<i>전주해성고</i>	<i>호남제일고</i>	<i>전주영생고</i>	<i>전일고</i>	<i>우석고</i>	
	8지망	9지망	10지망	11지망	12지망	13지망	제14지망	
	<i>완산고</i>	<i>전라고</i>	<i>전주고</i>	<i>전주제일고</i>	<i>동암고</i>	<i>전북사대부고</i>	<i>양현고</i>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는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정규 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i>2021. 3. 1.~2023. 8. 31.</i>		<i>0000학교 7~8학년 수료</i>			<i>중</i>	<i>중국</i>	<i>베이징</i>	<i>0</i>
. . . ~ . . .		학교 학년(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예정)수료.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예정)수료.재학중						
관계	성 명	거주국	거주기간 (출국 일자-입국 일자)		체류기간		연락처 (핸드폰)	
					거주국	제3국		
<i>본인</i>	<i>정전북</i>	<i>중국</i>	<i>2021. 2. 20.-2023. 9. 6. (2년 6개월 17일)</i>		<i>2년 4개월 17일</i>		<i>010-1111- 1111</i>	
<i>부</i>	<i>정교육</i>	<i>중국</i>	<i>2021. 2. 20.-2023. 9. 6. (2년 6개월 17일)</i>		<i>2년 2개월 10일</i>		<i>010-2222- 2222</i>	
<i>모</i>	<i>이행복</i>	<i>중국</i>	<i>2021. 2. 20.-2023. 9. 6. (2년 6개월 17일)</i>		<i>2년 4개월 17일</i>		<i>010-3333- 3333</i>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 특례입학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특례입학 대상자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24년 월 일								
				지원자	<i>정 전 북</i>	(인)		
				보호자	<i>정 교 육</i>	(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귀하								

서식 5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특례입학 심사 대상자 명단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특례입학 심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한자)	생년 월일	성별	출신 중학교	해당 법규	사유 유무	보호자		비고
							성명	관계	

※ 교육지원청 작성용, [엑셀 서식]으로 제출

1. 관련 법령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① 공증 담당 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 담당 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① 공증 담당 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 해당 문서가 공증 담당 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증 담당 영사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 도장을 찍고 확인 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 도장
 -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 도장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 담당 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귀국학생 등의 학적 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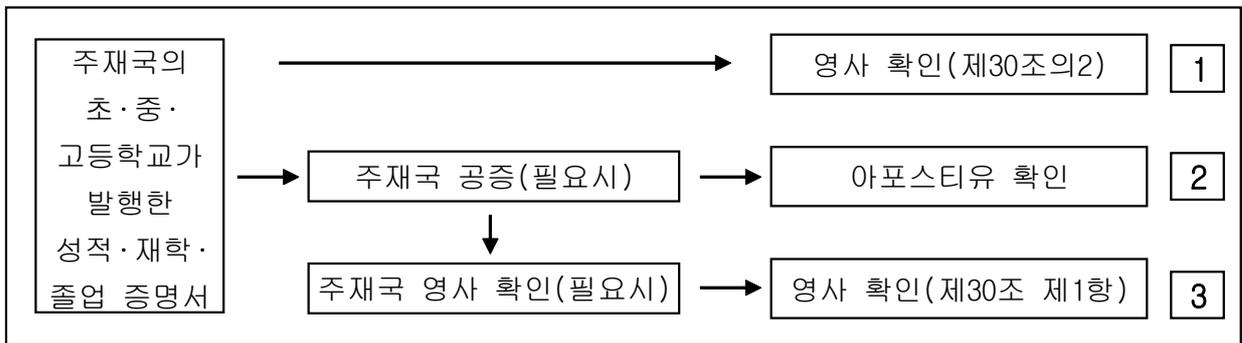
- 현행: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 개선: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 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 단, 누리집 미탑재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함

2. 법령 주요 내용

- 가. 외국의 학적 서류는 해당 외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할 수 있음(영사 확인)
- 나. 다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외국 공문서 국내 사용법

- 가.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는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나. 학적 서류 국내 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참고 2

학력 인정학교 목록 국가 및 도시명

지역권	학력 인정학교 목록 요청 국가명 ※ ()은 주 또는 도시명
아시아권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 위해, 연대, 광저우, 중국령 홍콩·마카오 등) 일본(동경, 오사카 등), 대만(타이베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필리핀(마닐라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인도(뉴델리 등), 튀르키예(이스탄불),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등) 몽골(울란바토르), 캄보디아(프놈펜 등) 등
유럽권	영국(런던 등), 프랑스(파리 등),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러시아(모스크바 등), 오스트리아(비엔나 등),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등) 아일랜드(더블린 등), 체코(프라하 등),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등) 등
북미권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중남미권	브라질(상파울루 등),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콜롬비아(보고타 등), 파라과이(아순시온), 에콰도르(키토 등), 멕시코(멕시코시티 등), 파나마(파나마시티 등) 등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등), 이란(테헤란 등),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요르단,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아프리카	이집트(카이로 등), 가나, 보츠와나, 브룬디,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등

※ 세부 학력 인정학교 목록은 교육부 누리집> 정책> 초·중·고 교육>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 목록 안내에 탑재하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참고 3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24. 1. 11. 기준

지역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22개국)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3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2개국)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31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3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2024.6.5. 협약 발효 예정)
중동 (5개국)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계	126개국

※ 협약가입국 갱신 현황 확인 사이트

① 헤이그 국제사법회(www.hcch.net)=> Apostille => Updated list of Contracting States

②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www.0404.go.kr) => 영사 서비스/비자 => 영사 서비스 => 아포스티유

※ 기준일자(2024. 1. 11.) 이후 관련 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 가입국 갱신 현황 등을 모두 반영하여 심사할 예정

참고 4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 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학교 정책과, 2015. 2. 2.>

□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 초·중의 경우 인정 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고등학교 유학은 비유학이므로 인정 유학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 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외국의 검정고시 인정 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 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 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 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 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 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 학제	12	5-3-4-4 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 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 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 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 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취학 / 외국 국적자: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 학제	12	5-3-4-4 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 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 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 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 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최종 판단**

참고 5

재외한국학교 현황

2023. 3. 기준, 16개국 34개교

국가	관할 공관	학교명	전화번호	팩스 번호	교육정보 시스템 사용 여부
일본	주일 대사관	동경 한국학교	81-3-3358-7001	81-3-3357-2236	사 용 (초등)
	주오사카 총영사관	교토 한국 국제학교	81-75-525-3535	81-75-525-3563	미사용
		오사카 금강 학교	81-6-4703-1780	81-6-4703-1766	미사용
		오사카 건국 한국학교	81-6-6691-1231	81-6-6606-4808	미사용
중국	주중대사관	북경 한국국제학교	86-10-5134-8588	86-10-5134-8595	사 용
		천진 한국국제학교	86-22-8829-7232	86-22-8829-7329	사 용
	주상하이 총영사관	상해 한국국제학교	86-21-6493-9501	86-21-6493-9502	사 용
		무석 한국학교	86-510-8548-9336	86-510-8548-9338	사 용
		소주 한국학교	86-512-6833-6525	86-512-6833-6526	사 용
	주칭다오 총영사관	연대 한국학교	86-535-210-2300	86-535-210-2305	사 용
		칭다오청운 한국학교	86-532-6696-8696	86-532-6696-8680	사 용
	주선양 총영사관	웨이하이 한국학교	86-631-558-0190	86-631-558-0172	사 용
		대련 한국국제학교	86-411-8753-6032	86-411-8753-6033	사 용
		선양 한국국제학교	86-24-6250-3801	86-24-6250-3830	사 용
	주광저우 총영사관	연변 한국학교	86-433-291-4228	86-433-291-2733	사 용
		광저우 한국학교	86-20-2868-0959	86-20-2868-0950	사 용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국국제학교	852-2569-5500	852-2560-6274	사 용
	대만	주타이베이 대표부	타이베이 한국학교	886-2-2303-9126	886-2-2309-7780
까오슝 한국국제학교			886-7-521-7751	886-7-521-7752	미사용

국가	관할 공관	학교명	전화번호	팩스 번호	교육정보 시스템 사용 여부
싱가포르	주싱가포르 대사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65-6741-0972	65-6467-1259	사 용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62-21-844-4958	62-21-844 -4927	사 용
베트남	주호치민 총영사관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070-7150-3071	84-8-5417-9028	사 용
	주베트남 대사관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84-4-7301-5339	84-4-7301-3495	사 용
태국	주태국 대사관	방콕 한국국제학교	66-2543-6981	66-2-543 -6980	사 용
이란	주이란 대사관	테헤란 한국학교	98-21-8873-4910	98-21-8873-8699	미사용
사우디 아라비아	주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젯다 한국학교	966-2-667-3704	966-2-667-1190	미사용
		리야드 한국학교	966-1-248 -0612	966-1-248-0639	미사용
이집트	주이집트 대사관	카이로 한국학교	20-2-2617 -3428	20-2-617-3430	사 용
파라과이	주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한국학교	595-21-300-397	595-21-310-053	미사용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54-11-4634-1588	54-11-4633-8598	미사용
러시아	주러시아 대사관	모스크바 한국학교	070-5135-7150	7-495-420 -2377	미사용
필리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070-7873-5100	63-2-403-3496	사 용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070-4024-7300	-	사 용
캄보디아	주캄보디아 대사관	프놈펜 한국 국제학교	023-901-500	-	미사용

- ※ 교육정보 시스템 사용 한국학교인 경우라도 학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한국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부 재외동포 담당관실로 문의
- ※ 변경 내용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영사 확인

**(영사 확인)
두 번째 방법**



北京市东方德才学校国际部
International Dept. of Beijing DongFangDeCai School
北京市朝阳区东晓于北里9号
No. 9 Building North of ShaoDaiLi
Chaoyang District, Beijing
Tel: 010-65948722 Fax: 010-65069722

在校证明
CERTIFICATE OF ENROLLMENT

兹证明韩国籍留学生曹贤真 (Passport No.) [redacted] 在我校 初中部 一年级就读。
在学期间: 2011年9月~2012年7月

特此证明。

Name: [redacted]
Date of Birth: [redacted]
Sex: M
Nationality: South Korea
The Period of Attendance: 2011~2012 7th Grade (2011.9~2012.7)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본 문서는 영사관장직에서 발행되었거나 공관을
공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2012-09-14

발행일자: 년 월 일 성명: [redacted]
등록번호: 년 제 호(학번) 직위: 영사
수료: 납부금 15,066 원본대조권
제재승인명칭 유증(제재)권
소속시 국 국 국

직인

北京市东方德才学校
2012年9月11日
원본대조권
2013년 8월

**영사관
확인 도장**

재학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영사 확인(2가지 유형)외에 학적서류 국내 사용]



STATE OF MISSOURI
Office of
Secretary of State

Requested for use in KOREA (SOUTH)
Not For Use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urpose of the Apostille is to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e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the document, the capacity in which the official signing the document has acted, and, where appropriate, the identity of the seal or stamp.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

-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 This public document has been signed by DANIELLE SWEENEY
- Acting in the Capacity of NOTARY PUBLIC - STATE OF MISSOURI
- bears the seal/stamp of DANIELLE SWEENEY - NOTARY PUBLIC - STATE OF MISSOURI
- at Jefferson City, Missouri
- The 17th Day of FEBRUARY, 2012
- by Robin Carnahan, Secretary of State, State of Missouri
- No. [redacted]
- Seal-Stamp
- Signature: [redacted]

Certified



Secretary of State

아포스티유 협약에 부속된 양식
(1. 국가명 ~ 10. 서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발행번호 Serial No. [redacted] 쪽수(Page):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성명 Name	[redacted]	처리기간	즉시
성별 Gender	여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redacted]
국적 Nationality	한국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redacted]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2007.08.01	2007.08.09	2009.08.12	2010.07.17
2010.07.28	2010.12.22	2010.12.31	2011.01.29
2011.02.07	2011.06.18	2011.08.09	2012.01.08
2012.08.10	2013.02.25	이하미관(The End)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
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Clause 1 of Article 88 of the
1000 Law.

기록대조자 확인
Verified by [redacted]
2007.01.01 부터 (from)
2013.02.25 까지 (to)

발급일 Date of Issue 2013.02.25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Incheon Airport Immigration Office

담당자 (Officer in charge): [redacted] 수수료: 1,000원
연락처 (Tel.): [redacted] Fee W

본 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www.immigration.go.kr의 자료실에 있는 검증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You may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with the verification program on the website at www.immigration.go.kr

체류기간 확인 가능

성적증명서

(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

서류 앞 뒷면 영사관 직인으로 간인 처리

(속지)3 ⇒ 5학년 성적증명서(2008년~2009년)

영사 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별지 40호 서식)

(영사 확인) 첫 번째 방법

서류 마지막면 영사관 직인으로 마무리

확인서 마지막 표지(법정 양식)

(별지 제40호서식)

(속지)3 ⇒ 5학년 성적증명서(2008년~2009년)

영사 확인

(영사 확인) 두 번째 방법

서류 빈자리에 영사관 확인 도장을 찍고 직인 날인으로 마무리

영사관 확인 도장

직인

(속지)3 ⇒ 5학년 성적증명서(2012년~2013년, 9학년)

1. 학생, 학부모의 국적 및 유형 확인

2.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소재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하였는가?

⇒ 부모: 거주기간 2년 이상 및 실 체류기간 1년 이상 / 학생: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2년 이상

⇒ 해당국에 학생만 유학했거나 부모 중 1명만 함께 거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한부모가족의 학생은 부모 중 1명과 함께 출국한 경우도 해당됨

(사례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필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상관없음

⇒ 부·모·학생의 동일국 거주 여부 확인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상의 재외국민 등록 국가 일치 확인)

3.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충족되는가?

⇒ 외국학교 전체 재학기간이 연속 2년 이상, 비연속 3년 이상인지 확인

⇒ 나라별 학제가 다르므로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의 일부(7~9학년) 이수 여부 확인

⇒ 전체 재학기간 중 편성된 학기를 완전히 이수하였는지 확인

⇒ 재학기간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수 학기 수가 충족되면 가능함

(예를 들어, 재학기간이 1년 11개월이고, 1년 2학기제인 나라에서 총 4학기를 이수했다면 인정)

4. 유학 전 최종 학년과 학기, 외국학교 편입 학년과 학기

⇒ 국내학교와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연속성 확인

⇒ 학교 소재지(국가) 확인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재학한 외국학교의 학제 편성 확인(봄 / 가을학기제, 학년 구성 등)

5. 귀국 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편입 여부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중학교에 신입학한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학생이 상담일 현재 외국에서 재학 중인 경우, 귀국 시기를 확인하여 중3 편입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일반고 편입을 원할 경우 귀국자 편입학 부서 안내

6. 제출서류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 자격 등)

-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유급생
- 2.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75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제82조(입학전형 방법)

- ① 전기 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같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 추천서
- 2. 면접
-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② 후기 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같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제9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제9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3(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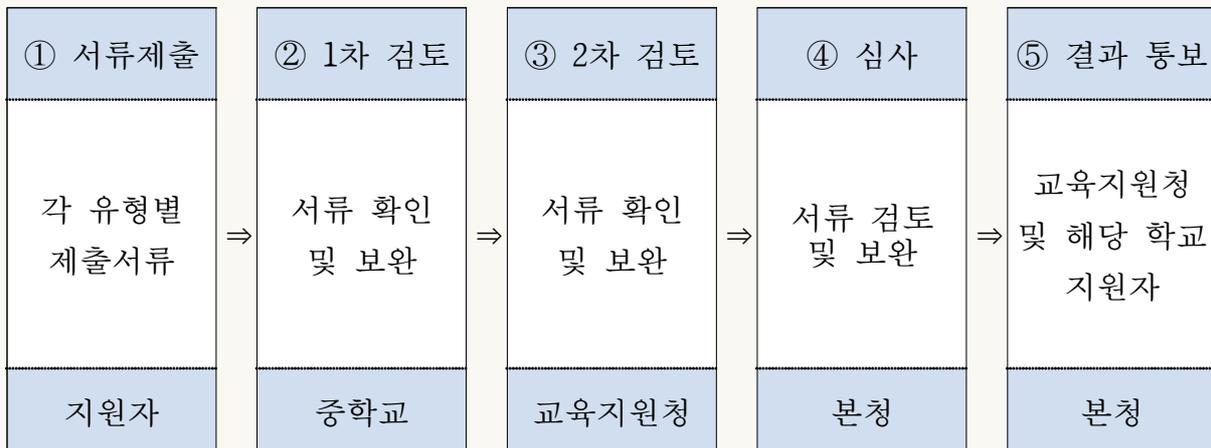
① 제97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 이탈 주민 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공 통

01. 특례입학이 무엇인지요?

-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일반 학생과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례 대상자는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외국인 학생·북한 이탈 주민 학생 등으로, 동 제도의 취지는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문화적 차이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형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내의 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등 해당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일반 학생의 고입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 등으로 실시하지만, 특례 학생은 중학교 성적 외의 별도 방법으로 학교별로 실시합니다. 특례 대상자 중 전기 고등학교 및 학교장 선발 후기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중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전원 선발하며,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02. 특례 대상자 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 되는지요?



03.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아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대체 가능 서류(예시)

-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 해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 ▷ 해당국 현지 기관 발행 체류 확인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
- ▷ 해당국 외국인 등록증, 의료 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 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4.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대상자의 경우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치나요?

- 특례입학 대상자(특례 심사 통과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진학 시,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합격 처리 후 배정됩니다.
-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특례전형이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에서 특례전형 탈락 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특례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05. 특례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이 된 학생이 과학고(전기 고등학교)에 특례로 지원하여 떨어질 경우 일반고(후기 고등학교) 특례 지원이 가능한지요?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 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경우 이중 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후기 일반고에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특례 대상자 심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례 대상자 심사 없이 후기 일반고의 특례 신입학 지원도 가능합니다.

06. 중학교에 편입학이 아닌 재취학한 경우 특례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나요?

- 중학교에 재취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특례 제2호, 제3호로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07. 현재 중3으로 특례 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례가 아닌 일반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 특례입학 자격심사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특례입학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한 입학전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례 대상자로 적격심사를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특례 입학전형 또는 일반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08.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을 했고, 중학교 졸업 후에 특례입학 대상자 조건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례입학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한지요?

- 교육감 선발 후기고(평준화 일반고)에 응시하는 경우 특례 대상자는 중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신 중학교를 통해 고입 원서를 제출하시면 학교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전산 추첨 배정됩니다.
- 특례입학 대상자가 학교장 전형고 진학을 원하면 해당 고등학교에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격자는 해당 학교의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선발합니다.

09. 귀국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입학 전 배정으로 후기 일반고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지요?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입학 전 배정 대상은 타 시도(전북 외 지역)에서 고입전형에 합격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전 가족이 전입한 자에 한합니다.

- 따라서 귀국자는 입학 전 배정 대상이 아니며, 1월 귀국을 예상하시면 3월 입학식 이후 인근 고교에 귀국자 편입학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0. 지난해에 특례 심사를 받아 특례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올해 다시 고입 특례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 특례 신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지원 하지 않았다면 아직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올해 고입 특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작년에 합격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신입학 할 경우에는 특례입학은 불가하며 일반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외국인의 경우 한국주재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외국 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 한국주재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문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국가의 한국공관 영사 확인을 추가적으로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외국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특례 대상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발하며, 학교별 특례전형 지원율을 알 수 있는지요? 일반전형보다 특례전형이 유리한지요?

- 특례입학 대상자는 대상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선발(배정)합니다.

구 분	지원 방법	선발(배정) 방법
전·후기 학교장 전형고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선발
	해당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교육감 전형고	출신 중학교에 원서 제출 후, 학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괄 접수 ※ 제1호, 제4호는 관할 교육지원청 에 제출	• 학군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 배정 (전산 추첨)

- 전기 고등학교 및 학교장 전형 후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며 학교별로 정원 및 지원자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율에 대해서는 해당 고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어느 전형이 합격에 유리한지 학교별 지원율로 판단하기보다는 학교별 특례전형의 심사 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시어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1 호

13.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9월에 귀국했는데, 고등학교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지요?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특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위 학생은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 때문에 고입 특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4. 중국에서 입양한 자녀이고 현지에서 9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데, 고등학교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지요?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2호 가목

15.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고등학교 특례 입학할 수 있는지요?

-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졸업 시 학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내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하신다면 고입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취득하신 후 국내 고등학교에 일반 입학을 하시면 됩니다.

16. 외국에서 5학년 1학기부터 7학년 1학기까지 약 2년 6개월간 재학하다가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 하였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 졸업을 해야만 합니다.
- 위 학생은 재학 및 거주기간은 충족되나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을 하였으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 외국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다시 외국학교에서 7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 고입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학하여야 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비연속 3년 이상(초4~5학년, 중1학년)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18.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초등학교에서 졸업 후 다시 출국하여 7학년을 1년 다녔습니다. 외국 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인데 특례가 가능한지요?

-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하고,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에 초등학교 1~3학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이나, 고입 특례 시 인정하는 재학기간은 7학년인 1년뿐이므로 특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 국내에서 3학년까지 재학한 후 외국에서 4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학교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다시 출국하여 외국학교에서 7학년을 다녀 총 2년 동안 외국학교를 재학했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비연속적이면(공백이 있으면) 총 3년의 재학기간이 필요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으므로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4학년과 7학년 각 1년씩 총 2년을 이수했으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 1년 2학기제 외국학교에서 총 2년(4학기)을 이수하였지만, 총 재학기간은 1년 11개월 15일입니다. 15일 모자란 것 때문에 특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지요?

- 학생의 재학기간을 계산할 때는 역년(Calenda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고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학년(Academic year)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위 학생은 재학기간 2년에 15일이 모자라지만 총 4학기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2년을 재학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21. 재학기간 2년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기간이 조금 부족해도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 외국학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미달인 경우에는 2년을 기준으로 각 2개월 범위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체류기간은 단축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외국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4학년부터 7학년까지 4년간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특례 편입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지요?

- 특례입학 대상자는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를 인정합니다.
- 따라서 위 학생은 중학교에 특례 편입학을 하였지만,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의 자격(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23. 외국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했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고입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학제로 계산하여 중학교 과정(7~9학년)이 일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 학생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과정만 이수를 했기 때문에 고입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4. 외국에 나갔지만 영어가 되지 않아 외국학교의 어학원 과정에 6개월을 다닌 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입학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총 2년을 재학했습니다. 어학원 과정도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는지요?

-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은 외국에 소재한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재학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학원 과정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학생은 외국에서 2년을 거주했지만, 실제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25 학생 혼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려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하여 졸업해야만 합니다.
- 위의 경우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한부모가족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부모 중 1인만 학생과 동행을 하였어도 부모가 모두 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6. 학생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학생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방학을 하여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간 경우 거주기간에서 한국 방문기간을 제하고 계산을 하는지요?

- 거주기간은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거주한 기간(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으로 입증)을 말합니다. 거주기간 중 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27.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학생이 부모 거주국과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원칙적으로 학생은 동일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이 되나 예외적으로 부모 거주국의 지역·종교·국제 정세 등의 특성상 동일 국가에서 재학이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3국에서 재학한 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제3국 수학 인정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28.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 2년간 재학을 하고, 이후에 아빠는 외국에 남아있고 학생과 엄마는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 특례 자격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귀국 시까지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라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 귀국과 무관하게 특례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29.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에서 부모가 학생과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입학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엄마만 학생과 함께 외국에서 거주했고, 아빠는 국내에 있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요?

- 외국에서 부모와 2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을 했을 경우에 특례 자격이 주어집니다.
- 위 학생의 경우,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 다만,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1인만 외국에 거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제출). 또한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중도에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거주기간에 포함이 되며, 한부모가족이 된 시점부터는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30. 특례 심사 당시(9월) 외국 거주기간이 모자라지만, 내년 2월쯤에는 특례를 위한 외국 거주 기간이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특례 신청자는 심사 당시 법령에 구비된 요건(거주·재학·체류기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위 학생은 특례 신입학 대상은 안 되나, 3월 초 입학식 이후의 특례 편입학 대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례 편입학은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1.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학교에서 2년간(5, 6학년) 재학하였고, 이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 혼자 남아 7학년을 마쳤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특례 대상 학생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에는 중학교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중에 외국학교의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 학생은 고입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제2호 나목

32.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과학기술자의 자녀이고, 외국에서 9년 재학 후 귀국하였습니다.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요?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이 아닌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했으므로 유형 2-나로 특례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외국에서 9년 재학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재학(졸업)증명서, 학생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추어 제1호로 특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2호 다목

33. 전 가족이 외국 국적을 소지하였습니다. 학생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재학을 하였고,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인데,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 외국인 학생이 특례 대상이 되려면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해야 합니다.(다만,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함)
- 외국의 학교라 함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뜻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학생은 외국학교가 아닌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것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4. 중국인 학생이 외국에서 8학년까지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여 중3에 편입한 후, 얼마 전 귀화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국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 외국인 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상실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학생 및 부모의 국적에 따른 특례 대상 여부는 학생의 국내 중학교 편입 시점 및 부모의 귀국 시점에서의 국적, 해외 실거주 기간, 귀화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5. 현재 한국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복수 국적자인 경우 한국 고등학교에 특례로 신입학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 학생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36. 외국 소재 학교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학교(제주국제학교 및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용산 미군기지 내 학교 등)는 특례입학 요건의 외국 학교에 해당이 되는지요?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미군기지 내 학교 등은 국내에 소재한 학교이므로 외국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3 호

37. 북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 후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재학’ 시 반드시 북한에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학력 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1~4학년 과정만 이수하였다면 중학교 과정을 미이수한 것이므로, 유형 3에 대한 특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4 호

38. 학력 확인서와 학력 인정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일지요?

- 학력 확인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제115호)에 의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이수한 최종학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행정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 인정증명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는 증명서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